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3항 개정에 관한 청원 제안 설명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김 기대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이 소개한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3항 개정에 관한
청원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
게 생각합니다.

청원의 소개 이유 및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지난 2017년 3월 23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
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조업은 너비 12m 이상 도로
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(제28조제3항너목)가 개
정된 바 있습니다.

현행 조례에 따를 경우 식육포장가공업을 중심으로 성
장해 온 마장축산물시장의 경우 이 도로 기준을 충족하
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용도변경을 통한 식육
포장가공업 등의 확대 설치 등을 할 수 없고, 식품안전

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을 위한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구비를 위한 신규투자가 불가하여 판로개척과 시장활성화를 저해함에 따라 60여년 전부터 형성된 마장 축산물시장의 집단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 대로 청원인들의 요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